

(주)대신경제연구소 이해상충방지 정책

제정 2021.01.

대신경제연구소(이하 '회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관리에 소홀히 할 경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체계 구성과 권한 및 책임 배분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에게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은 각 부서가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해상충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회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이해상충방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합니다.

회사는 업무 이행 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관리합니다.

소유지배구조에 의한 이해상충

회사의 관계사 또는 회사의 관계사와 실제·잠재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거래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회사의 고객 또는 회사의 고객과 소유지배관계 및 실제·잠재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적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관계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에 의한 이해상충

회사의 임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겸직 중인 기업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응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으로서의 독립성 확보

회사는 대신증권(주)의 자회사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로부터 경영 및 영업을 철저히 분리하여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 및 관계사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회사의 의안분석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각종 기준의 제·개정에도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직원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회사는 이해상충을 포함하여 직무 윤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하는 임직원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여러 고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윤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회사 및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 및 장치 마련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윤리헌장, 윤리강령,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 정책, 이해상충방지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별도로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은 업무를 담당하기 전 분석대상 기업과의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방지검토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합니다.

정보교류의 차단

회사는 이해상충 정도를 감안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보에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정 임직원의 업무 배제

분석대상 기업과 회사 임직원 간 특수한 관계가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인적관계 및 겸직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이 분석대상 기업과의 대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관리하여 자본시장법상 저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임직원 대상 교육

회사는 이해상충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지 및 의무 사항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임직원이 준법감시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동시에 고객에게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고지하고, 이후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본 ‘이해상충방지 정책’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상충 이슈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정책을 개정하고 해당 정책은 회사 웹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
니다.